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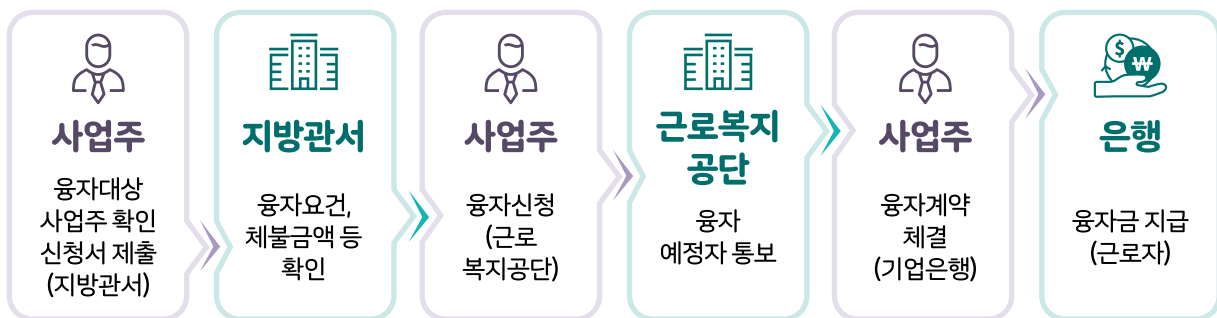
지원 요건

구분	지원 요건
사업주 요건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근로자 요건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고 있는 근로자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 한 근로자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융자 조건
융자금액	사업주당 1억 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이자율	(담보) 연 2.2% / (신용·연대보증) 연 3.7% * 한시적 금리인하(7.15.~10.14.) : (담보)2.2% → 1.2%, (신용·연대보증)3.7% → 2.7%
상환방법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원금균등 분할상환(선택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융자신청 절차



안내·문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1350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1588-0075



고용노동부